

#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안)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12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2월 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1조 및 제56조에 따라 「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안)」을 마련하였고,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,

나. 「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(안)」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용산 국가시범지구 혁신지구계획(안)

-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
-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에 관한 계획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
- 자원 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등

## 3. 추진경위

- 2019. 7.18.: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제4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
- (심의의견)향후 창업문화복합허브에 혁신지구 지정시,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
- 2019.08.27.: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에 따라 혁신지구 지정 추진(19.11.28.시행)
- 2019.09.05.: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
- 2019.09.06.~10.29.: 온전한 용산공원사업을 위해 舊 방사청 부지 편입에 따른 용산 혁신지구내 공공청사 마련을 위한 용산 우수지 활용 TF 구성, 회의(3차)
  - 국토부 혁신지구 신규제도 설명회(10.10.)에 따라 용산 혁신지구 LH제안 서울시 신청
- 2019.11.22.: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계획(안) 제출(LH → 서울시)
- 2019.11.28.: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 자문(조건부동의)
- 2019.11.29.: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
- 2019.12.02.: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 및 신청 [LH(제안)→서울시(신청)→국토부(지정결정)]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1조, 제56조 및 제33조
- 나. 예산조치 :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이후 국·시비 분담비율(4:6)에 따라 예산 별도 책정 검토 필요하다.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재생정책과 재생사업팀 한광희 (☎ 2133-8636)